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3년 5월 4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3년 5월 11일
- 라. 상정일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3.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가. 제안이유

-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을 변경하고 작은도서관 기능 추가 및 등록·변경·폐관에 관한 규정 신설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2조)
- 작은도서관 기능 추가에 따른 내용 정비(안 제5조)
- 작은도서관 등록 및 변경·폐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운영인력 교육 규정 정비(안 제9조)
- 폐기·제적 자료에 대해 무상배포 근거 규정 신설(안 제13조제2항)
-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가(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시행 '22.12.8.) 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일부 조항을 보완·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 및 안 제7조(설립 및 위탁)는 상위법령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한 것이며, 안 제5조(기능)는 「도서관법」 제32조제4호에 근거하여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상호대차서비스” 및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가함.
 - 안 제7조의2(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는 작은도서관의 등록·변경등록·폐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조항 신설에 따른 별지 서식 또한 「도서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신설함.
 - 안 제9조(운영인력)는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운영인력에 대해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함.
 - 안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는 이용가치가 없거나 손상 등으로 인해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에 대해 기관, 시설,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안 제15조(독서진흥)는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작은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등의 참여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시행 '22.12.8.) 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도서관 관리를 강화하고자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등록제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하고 있음. 또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여 작은도서관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적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50 호
----------	---------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 등을 수정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안 제2조, 제7조제2항)

나. 작은도서관의 기능 구체화 및 보완(안 제5조)

다.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및 변경등록, 폐관에 대한 규정 명문화 신설(안 제7조의2)

라.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교육 근거 보완(안 제9조)

마. 제적·폐기 도서에 대한 재활용 근거 기준 마련(안 제13조)

바. 작은도서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가(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3. 30.~4. 19.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2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2호”로 한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5조제1호 중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을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상호대차 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제7조제2항 중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2(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운영자가 해당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폐관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시설,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독서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활발한 독서활동을 위하여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교육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도서관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도서관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국립도서관	<input type="checkbox"/> 공립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사립도서관
	<input type="checkbox"/> 공공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작은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어린이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도서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설립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등록번호	제 호	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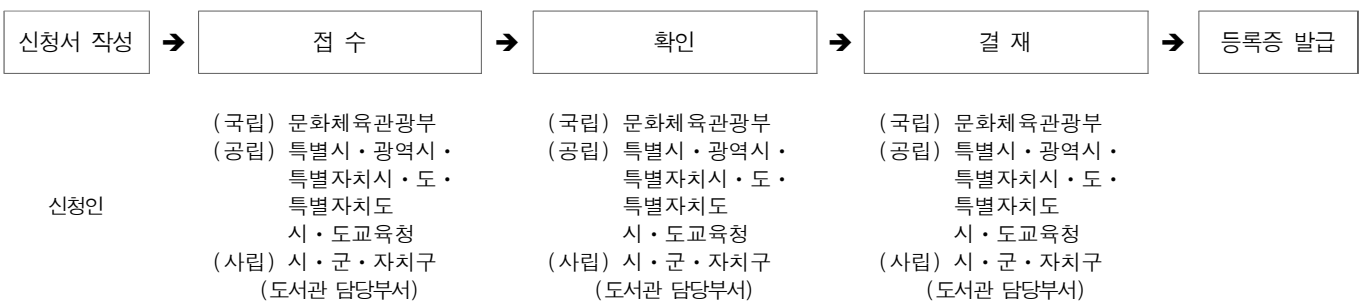
영등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별지 제2호 서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자료 명세서

명 칭				
도서관의 종류	[] 국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사립도서관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 기타	
사 서	명 (정사서 명, 준사서 명)			
시 설	부 지	면 적	m ²	
	건 물	전 체 면 적	m ²	
		도서관서비스 전 용 면 적	m ²	
		공 용 면 적	m ²	
	열 램 석	좌 석 수	석	
		열람실 수		
	기계 · 기구			
도 서 관 자 료	도 서	권		
	연속간행물	종		
	비도서자료	종		
	그 밖의 자료			

제 호

공공도서관 등록증

1. 명 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4. 등록 연월일:
5. 도서관의 종류:

「도서관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영등포구청장

직인

첨부서류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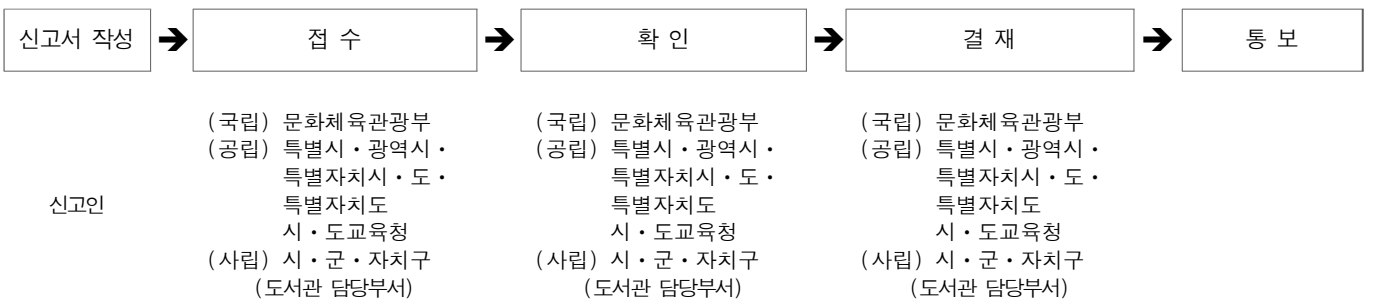
작성방법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p> <p>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p> <p>3.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p> <p>4. ~ 6. (생략)</p>	<p>제 2 조 (정 의)</p> <p>-----</p> <p>-----.</p> <p>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p> <p>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p> <p>3. ----- 「도서관법」 제3조제2호-----</p> <p>-.</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p> <p>2. ~ 4. (생략)</p> <p><신설></p> <p>5. (생략)</p>	<p>제 5 조 (기 능)</p> <p>-----.</p> <p>1. -----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상호대차서비스</p> <p>2. ~ 4. (현행과 같음)</p> <p>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7조(설립 및 위탁) ① (생략)</p> <p>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와 같다.</p>	<p>제7조(설립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p>

③ (생략)

<신설>

제9조(운영인력) ①·② (생략)

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운영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과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운영자가 해당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폐관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인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① --- 위원회

자료를 교환·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염 또는 손상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시설,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15조(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의 활발한 독서활동을 위하여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교육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